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가단1114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피 고 1. D

2. E

3. F

변론 종결 2020. 7. 24.

판결 선고 2020. 8.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20. 4. 7.부터, 피고 E는 2020. 4. 8.부터, 피고 F는 2020. 5.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우관제

청 구 원 인

1. 원고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소외 망 G의 딸, 아들들인 상속인으로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이기에, 2020.3.5.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원중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에 따른 판결금 수령 등 일체권한을 위임한 자입니다(갑제1호증의 1 - 제적등본, 갑제1호증의 2,3,4 - 각 위임장).

- 망 G 및 남편인 H가 각 사망하여 원고들이 소외 망 G의 상속인들임.

2. 기초사실 관계

: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판결 및 조정

가. 원고들의 모친인 소외 망 G 그리고 소외 I, J, K, L, M(이하, 원고들 이라 합니다) 및 소외 N의 모친인 소외 망 O(이하, '망인'이라 함)는 이 사건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1990. 4. 24. 자로 이를 소외 N(망인의 차남)의 처(D)와 아들(E, F)인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 이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 지상에 제8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내지9 - 각 등기부등본).

나. 망인은 1992. 9.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1995. 7. 20. 사망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평균 평당 1,000만원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조정 조서상의 원고) J, G, K, L, M에게는 각1억원을, 나머지의 1/3은 원고 I에

게, 나머지 2/3은 소외 N에게 배분한다.

2) 평당 1,000만원 이상 이라 함은 이 사건 상속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비용 등 일체 경비를 공제하고 평균 평당 1,000만원 이상일 경우 J, G, K, L, M에게 각 금1억원을 배분하는 것이며, 만일 평당가격이 1,000만원에 미달될 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할당액을 감액한다.

3) 유언에 따른 집행 및 사후 처리는 소외 N가 하기로 한다

그러나 위 N는 망인의 사망 후에 유언집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2001. 2. 13. 위 법원 원고들의 청구에 의하여 99노단1590호로 유언집행자로 소외 N를 해임하고 변호사 소외 P를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일부 토지가 2004. 8. 17. 대구 북구청에 수용되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은 별지목록 제1 내지 제7항 기재 부동산 및 토지 수용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2004. 8.경 위 토지수용보상금 557,040,397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점유한 이후인 1998.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이득인 금873,176,052원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갑제3호증의2 - 판결문 참조)

다. 나아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상속부동산 별지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별지 제5,6,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는 등, 망인의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로 타인에 대한 임대는 물론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 계속적으로 위 법원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라. 위 법원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제기에 따른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조정의 성립

(1) 이에 위 법원 원고들은 소외 N와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에 따른 권리행사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가합 13019호로서 부당이득금반환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들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08나85668호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9. 5. 11. 확정된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의 1-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 조정조서경정, 갑제3호증의 2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나85668 부당이득금반환 조정조서)

조정조항

1. 가. 원고 J, G, K, M는 대구지방법원 S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
나. 위 경매신청 관련 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2.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① 별지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금액은 피고들에게 분배하고, ②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금액은 피고들이 부담한 증여세 374,159,940원과 피고들이 위 경매로 인하여 부담할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들에게 분배한 다음 그 나머지를 원고 I에게 1/3, 피고들에게 2/3의 비율로 각 분배하되,
나. 1) 원고 J, G, K, L, M에 대한 각 137,500,000원,
2) 별지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 등기소 1999. 3. 11. 접수 제16972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3) 별지 제6,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4. 2. 2. 접수 제 817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1996. 8. 2. 접수 제

228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분배금에서 각 우선 변제한다.

3. 원고 I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I 명의의 각 가치분,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가치분, 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한다.
4.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위 조정사항의 취지인 즉,

1) 망인이 남겨준 상속재산을 경매를 통하여 일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하되,

2) ① 피고들이 신축한 건물인 별지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피고들에게 분배하고, ② 상속재산을 피고들 명의로 이전함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 증여세 금 374,159,940원과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피고들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며

3) 그 나머지를 소외 I에게 1/3, 피고들에게 2/3의 비율로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4) 나아가 피고들은 소외 J 등 여형제 5명(이 사건 원고들의 모친인 소외 망 G도 포함)에게는 각 금137,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는 피고들이 분배받은 2/3 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피고들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당연히 피고들이 분배받은 2/3에서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I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1/3지분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체 처분 대금중

1/3지분권에 해당되는 금원을 분배받는 것이며, 피고들은 2/3지분권에 해당되는 분배를 받지만 그들의 분배금에서 여형제 5명에 대한 금687,500,000원(=137,000,000원 X5명)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임의처분 함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채권의 발생.

가. 이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위 소송은 여러 차례 조정을 통하여 소외 I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1/3 상속재산 분배청구권이, 나머지 소외 J 등은 피고들에게 각 137,500,000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판결(조정결정)로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은 조정조항 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러면서 피고들은 위 조정조항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¹⁾ 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주유소"와 "피자가게"를 임대하며 위 조정조서(2009. 5. 11.)이후 수십억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 11. 27. 자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5,6,7,8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T에게 금6,100,000,000원에 임의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전액을 피고들이 수령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5,6,7,8 - 각 등기부등본 참조).

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5,6,7,8 부동산을 임의로

1) 그동안 피고들은 위 조정조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속부동산 분할 판결(조정조서)에 따른 매매대금 분할을 지체하여 원고 등은 위 조정조서에 의해 강제경매신청을 3차례에 걸쳐 한 바 있으나(갑제2호증 - 각 등기부등본 갑구 참조), 경매개시 결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가격이 전무하고 경매법원 최저매각가격이 현실적으로 감정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피고들이 임의로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Q 26억원과 R 17억원 등 43억원이 있었음 : 갑제2호증-각 등기부등본 을구 참조)을 공제하고 나면 잉여재산이 없어 할 수 없이 2011.3.22. 경매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조정조서상 '일괄하여 경매하기로 한 조정조항이 집행불능에 이르렀고' 결국 위 서울고등법원 원고들은 더 이상 조정조서에 따른 집행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자력에 의한 재산분배를 할 수가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멋대로 전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함으로써 인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들이 배분받을 금원상당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들이 조정내용과 달리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원고들은 그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위 조정조서상 집행권원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습니다.

4. 피고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제기 및 화해권고결정

가. 이와같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가 성립되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조정사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임의처분함으로써 인하여 조정사항이 집행불능되기에 이르러,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원고들은 조정조서에 의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 256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갑제4호증의 1,2 - 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원고들 중 '소외 망 G'는 사망한 자이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미국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추후에 별소로서 소제기하기로 하고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나머지 원고들만이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그 후 위 소송은 2020.1.28. 화해권고 결정되기를,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5,6,7,8 부동산을 피고들이 임의로 처분한 청구부분

에 대해서만 조정하고,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원고들 중 소외 I과 관련된 조정조서에 관하여 '이행불능에 따른 화해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별지목록 제1,2,3,4,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에 의한 지분이전 청구 등)'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 위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들이 소외 I에게 배분될 부당이득금 1,165,498,790원과 이 사건 원고들의 모친인 소외 망 G를 제외한 나머지 여형제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각 금137,500,000원을 지급하는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제5호증의 1,2,3,4 - 화해권고결정, 경정결정,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56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화해권고
결정(일부)**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I에게 1,165,498,790원, 원고 J, K, L, M에게 각 137,500,000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과 원고 I은 제1항 기재 1,165,498,790원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가. 원고 I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1534호 및 같은 법원 2016카단 805268호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의 가압류신청을 취하(해제)한다.
 - 나.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가압류집행을 취소받기 위한 해방공탁으로 2017.11.2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번호 2017년 금제24701호로 공탁한 돈 전 부(9억 원 및 이에 대한 공탁이자액을 포함)와 같은 법원 공탁번호 2017년 금제

24702호로 공탁한 6억 원 중 265,498,790원 및 이에 대한 공탁이자액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원고 I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대한민국 [소관: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피고들은 위 양도사실의 통지권을 원고 I에게 위임한다 [원고 I은 위 양도사실을 직접 대한민국(소관: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공무원)에 통지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 I에 대하여, 원고 I이 위 각 부동산가압류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25449호, 2015금25450호, 2015금25451호 공탁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3089호 공탁사건의 공탁금)에 관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

라. 위 가.항 기재 취하(해제)의 의사, 나.항 기재 양도 및 위임의 의사, 다.항 기재 동의 및 포기의 의사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각각 확정적으로 표시되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들은 2020.2.29.까지 원고 J, K, L, M에 대한 제1항 기재 돈(각 137,5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별 은행계좌 [U은행 V 법무법인(유)한별]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들은 원고들의 2019.8.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의 제1의 나.항 청구 중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들의 2019.8.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의 제1의 나.항 청구에 관하여 발생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한편, 피고들은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던 조정금을 최근에서야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원고들 중 소외 망 G를 제외한 소외 I에게는 전액을, J 등에게는 일부금인 각 금84,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이고 아직도 각 금53,500,000원은 미지급한 상태로 있습니다.

5. 결 론

이에 소외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금 137,500,000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